

株主各位

주주총회 소집통지서 (2017년도 전환주식 종류주주총회)

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 344 조 및 제 435 조에 의거 2017년도 전환주식 종류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시 : 2017년 12월 29일 (금요일) 10시

2. 장소 : 서울시 중구 후암로 98 LG 서울역빌딩 20층 대회의실

3. 회의 목적사항

【부의 안건】

- 제 1 호 의안 : 전환주식 전환청구기간 연장의건 (별첨 참조)

4. 경영참고사항의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, 본점 및 지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KEB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(전자공시)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14 조 제 5 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2017년 12월 14일

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

주식회사 STX

대표이사 김동휘 (직인생략)

[별 첨]

[제1호 의안] 전환주식 전환청구기간 연장의 건

가. 대상 주식 : (주)STX 기명식 전환주식 1,271,000주

나. 전환청구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: 1년 연장

| 구분 | 기존 | 변경 후 |
|--------|--|--|
| 전환청구기간 | 전환주식 발행일의 1개월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 | 전환주식 발행일의 1개월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 |
| 존속기간 | 본 주식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주식을 보유한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| 본 주식의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주식을 보유한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|

※ 전환청구기간 및 존속기간 외 기타 발행조건 변경 없음

□ 전환주식 발행 조건

1. 액면가 : 주당 2,500원
2. 1주당 발행가격 : 주당 2,500원
3. 주식의 종류 : 기명식 전환 주식
4. 의결권에 관한 사항 : 전환주식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5. 배당에 관한 우선권 : 전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6.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 : 회사의 청산시 보통주식에 대한 회사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.
7. 전환에 관한 사항 : 전환주식의 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주식을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.
 - (1) 전환비용: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된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.
 - (2) 전환가격: 전환가격은 1주당 2,500원으로 하고, 별도의 전환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.
 - (3) 전환청구기간: 전환주식 발행일의 1개월 이후부터 2018. 12. 31까지로 한다. 다만, 전환청구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청구 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
 - (4) 전환청구 절차: 전환주식의 주주는 전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환의 대상인 전환주식의 주권과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.
 - (5) 전환의 효력발생: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
 - (6)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: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보통주식수를 유보한다.
8. 존속기간 : 본 주식의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주식을 보유한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